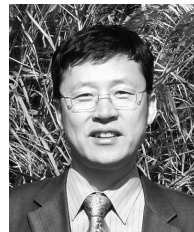


# 사립대학의 보훈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재원 확보 방안

계명대학교 기획평가팀장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장  
박 상 훈



## 1. 서론

장학금은 크게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과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필요장학금(need-based grant)으로 나눌 수 있다. 드림장학금과 국가장학생 장학금은 성적장학금에 해당하고, 국가근로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필요장학금에 속한다.<sup>1)</sup> 보훈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유공자 대상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이하 ‘보훈장학금’이라 함)는 또 다른 국가장학금인 필요적 장학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장학금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7) 「고등교육법」 제8조8)에 근거하여 2013년 현재 3개의 단위사업(세부사업 동일), 내역사업으로는 드림장학금 사업, 국가

<sup>1)</sup> 김소정(2013.6.),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p. 12

장학생 사업(인문사회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국가장학금 사업 등 4개의 장학금사업을 운영 중이다.

보훈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음에도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사업에는 속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보훈장학금의 장학금제도를 분석하고 그 지원취지와 수혜대상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주관기관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대학의 설립형태(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따라 보훈장학금 제도운영 상에 나타나는 제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보훈장학금 제도 분석

### 가. 보훈장학금 지원 취지

국가유공자 대상 학생의 교육비지원의 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훈장학금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1961년에 국가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호자라는 취지에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오던 이 제도는 시작된 지 16년 후인 1977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와 협조하여 대학등록금면제로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 나. 보훈장학금의 유형과 해당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대상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sup>2)</sup>

#### ① 보훈대상 자녀가 입학한 경우 보훈장학금 지원

보훈대상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하되, 보훈대상 자녀가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면 전액 면제된 수업료 등의 재원을 100% 국가(보훈처)가 해당 국·공립대학에 지원하지만, 보훈대상 자녀가 사립대학에 입학하면 전액 면제된 수업료 등의 재원 중 50%만 국가가 해당 사립대학에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사립대학이 등록금재원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② 국가유공자 본인이 입학한 경우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하되,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공립대학에

<sup>2)</su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③ 사립인 대학 등의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부공수훈자, 보공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 이슈진단 및 분석

입학하면 전액 면제된 수업료 등의 재원을 100% 국가(보훈처)가 해당 국·공립대학에 지원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립대학에 입학하면 전액 면제된 수업료 등의 재원 100%를 해당 사립대학의 등록금재원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가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 등을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또한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은 ‘보훈장학금’이라는 과목으로 등록금재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 다. 보훈대상 자녀 보훈장학금과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장학금 지급비율

최근 3년간 A사립대학의 등록금재원 50%를 보훈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보훈대상 자녀 대상 보훈장학금과 등록금재원 100%를 보훈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대상 보훈장학금의 연도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 보훈대상 자녀 보훈장학금과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장학금 지급비율

연도	보훈대상 자녀 보훈장학금 (등록금재원 50%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장학금 (등록금재원 100% 지원)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1	6.58	84	2.72	16	7.79	100
2012	6.11	78	1.68	22	7.79	100
2013	7.17	81	1.66	19	8.83	100

(단위: 억원, %)

### 라. 사립대학의 보훈장학금 재원

보훈대상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당사자가 수업료 등으로 100% 면제 받은 보훈장학금의 50% 또는 100%는 등록금재원에서 지급된다. 보훈대상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립대학에 입학했을 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수입·지출회계는 다음과 같다.

- 1) 보훈대상 자녀가 입학한 경우 : 수업료 등이 100원이라고 가정
  - ①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자녀 지원보조금이 입금되었을 때  
(차변) 현금예금 50원 (대변) 기타보조금(보훈자녀) 50원
  - ② 보훈대상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할 때(국가보훈처 지원보조금 50원, 등록금지원금 50원)  
(차변) 장학금(보훈자녀) 50원 (대변) 등록금수입 100원  
학비감면(등록금지원금) 50원
- 2) 국가유공자 본인이 입학한 때(등록금지원금 100원)  
(차변) 학비감면(교비지원금) 100원 (대변) 등록금수입 100원

### 마. 사립대학의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 지급현황

2012학년도 사립대학이 등록금 재원으로 보훈대상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등에게 수업료 등을 면

제하는 방식으로 보훈장학금을 지급한 현황은 [표 2]와 같다.<sup>3)</sup>

표 2 |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 수혜학생 수 및 보훈장학금 지급액

총응답 대학 수	총재적 학생 수	등록금 재원 보훈장학금		총응답대학 평균			1인당평균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
		수혜 학생 수	보훈장학금 지급액	재적 학생 수	수혜 학생 수	장학금 지급액	
85개	1,098,601명	11,103명	237억 원	12,925명	131명	2.8억 원	214만 원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개 응답대학에서 등록금재원으로 보훈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 수는 11,103명이며 보훈장학금 지급액은 약 237억 원이다. 이는 한 개 대학 당 131명의 보훈장금 수혜학생이 약 2.8억 원의 보훈장학금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1인당 평균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은 214만 원이다.

이를 152개 회원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환산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 회원대학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 총액

총응답대학 평균 재적학생 수	총응답대학 평균 수혜학생 수	평균 수혜학생 비율	152개 회원대학 총재적학생 수	보훈장학금 수혜 예상학생 수	1인당 평균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	152개 사립대학 연간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총액
12,925명	131명	0.01%	1,637,296명	16,372명	214만 원	350억 원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2개 회원 대학 전체가 등록금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보훈장학금 추정액은 약 350억 원이 된다.

### 3. 사립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사립대학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교내장학금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교외장학금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대학 외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일정액을 감하거나 면제시켜주는 학비감면을 포함한다.

학비감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장학금이다.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 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립대학은 연간 등록금수입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면제·감액해줘야 하는 것이다.

2012년 기준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수도권 대학 평균 교내장학금지급액은 등록금 수입 대비 20.9%이며, 비수도권 대학은 17.9%이다.<sup>4)</sup> 이는 법정 교내장학금 지급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등록금재원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up>3)</sup> 2013년 2월 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학발전기획단에서는 152개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2012학년도 사립대학 등록금재원 보훈장학금 지급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56%인 85개 대학의 회신결과를 근거로 추산한 것임

<sup>4)</sup> 대학교육연구소(2014.1.22.), 대교연 통계 (기본) 16호, p.5

## 이슈진단 및 분석

또한 2012년 현재 사립대학에서 지급되고 있는 모든 장학금 중 교내장학금지급비율은 60%가 넘는다.<sup>5)</sup> 등록금을 주된 교비수입<sup>6)</sup>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는 대학 자체수입 재원으로의 교내장학금 확대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교내장학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부득이 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학생등록금의 절반을 교부금 등으로 직접 부담하고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7)</sup>

### 4. 보훈장학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가. 보훈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국가장학금 주관기관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대학의 설립형태(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따라 보훈장학금 제도운영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훈장학생 수혜학생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설립형태 즉,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구별 없이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립대학에 입학하는 보훈자녀는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보훈자녀들보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② 사립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감액 및 면제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보훈대상 학생들이 입학하면 수업료 등의 50% 또는 100%를 학비감면이라는 과목으로 등록금재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훈대상 학생 수만큼 일반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③ 2012년 기준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사립대학 평균 교내장학금 지급액은 등록금 수입대비 수도권 대학은 20.9%이며, 비수도권 대학은 17.9%이다. 이는 법정 교내장학금 지급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등록금재원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을 보훈장학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이는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④ 2011년 기준으로 사립대학(195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60.3%이며<sup>8)</sup>, 국·공립대가 40.0%인데 비해 20.3%가 높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립대학에서 지급되고 있는 모든 장학금 중 교내장학금지급비율은 60%가 넘는다. 지금과 같이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동결 내지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때에 보훈장학금의 등록금재원으로 부담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sup>9)</sup>

<sup>5)</sup> 대학교육연구소(2014, 1, 22.), 대교연 통계(기분) 16호, p.5

<sup>6)</sup> 우리나라 사립대학재정의 수입원은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적립금, 차입금 등이다. 2011년 기준으로 사립대학(195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60.3%이며, 국·공립대는 40.0%이다.

<sup>7)</sup> 전게서, p.5

<sup>8)</sup> 김소정(2013.6.),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p. 11

<sup>9)</sup> 송기창(2011.10.),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의 쟁점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 3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

표 4 |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연도	등록금수입	자금수입 총계	의존율
2009	98,645	156,417	63.1
2010	103,020	164,851	62.5
2011	106,445	176,609	60.3

(단위: 억 원, %)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12 대학재정통계연보

나. 개선 방안

보훈장학금의 지원취지와 수혜대상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주관기관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대학의 설립형태(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따라 보훈장학금 제도운영 상에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① 보훈대상 자녀 교육비 지원제도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말고 현재 교육부의 대학 장학금 사업과 같이 보훈장학금 수혜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국가장학금의 재원은 [표 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교육부 소관 학자금 대출 연도별 미집행액으로 하면 될 것이다.

표 5 | 교육부 소관 학자금대출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적 현황<sup>10)</sup>

연도	계획	실적	차이	집행율
2010	28,646	27,661	985	96.56
2011	29,200	26,853	2,347	91.96
2012	23,701	23,265	436	98.16

(단위: 억 원, %)

- ② 사립대학에 입학한 보훈대상 자녀 교육비 지원금은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평균금액 수준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 ③ OECD나 유럽의 경우<sup>11)</sup>와는 달리 전체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으로 대학교육을 민간비용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지원금을 OECD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액(국가지원금)평균치<sup>12)</sup> 정도로 확대하고 대학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방법 또한 광의의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

<sup>10)</sup> 김소정(2013.6.),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p.17, 발췌

<sup>11)</sup> 대학유형별 재학생 비중(2010, OECD 교육지표)

구분	국·공립대학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구분	국·공립대학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노르웨이	88%	12%		프랑스	86%	1%	13%
미국	67%		33%	이탈리아	93%		7%
스웨덴	93%	7%		한국	22%		78%
영국		100%		뉴질랜드	98%	2%	
핀란드	87%	13%		체코	89%		11%
일본	25%		75%	멕시코	66%		34%

자료원: 한겨레(hook.hani.co.kr/archives/49527, 2013.04.30.), 국가장학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sup>12)</sup> OECD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액 평균치는 GDP의 1%이며, 우리나라는 0.6% 수준임

### 5. 결론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35만 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2,571만 원의 약 28.6%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7,686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49,922달러의 55.5%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등록금은 그 의존율로 볼 때 사립대학 교육의 질과 특성화, 경쟁력의 핵심 직결요소이다. 최근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어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사립대학에 있어서 등록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여 더욱더 합리적인 대학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은 교육환경과 시설의 현대화 등 교육 인프라의 지속적 으로 유지 필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권위 있는 교원 확보 요구, 첨단 기자재 도입 등 많은 분야에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보훈장학금이 그 취지와 수혜대상자의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설립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세혜택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보훈대상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공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어느 대학에 입학하든지 같은 조건의 교육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는 대학 역시 그 설립유형에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동일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필자소개

**박상훈** | 계명대학교 기획평가팀장,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장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회계학전공)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학교회계기준제정위원회」 실무위원(2006. 10 ~ 2007. 12),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연구정책팀」 연구위원(2006. 9 ~ 2012. 2),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국제청 신고서식 개선위원회」 연구실무자문위원(2009. 12 ~ 2010. 3), 한국교육개발원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자료 심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위원 및 현장실사위원(2010. 7 ~ 8)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국대학교 기획관리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